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휴일근로임금 별도 표시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74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707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휴일근로임금 별도 표시 (안 제22조제2항)	3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707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0.

다. 회 부 일 : 2024. 12. 31.

2.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 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영업상의 결정이 아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

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
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휴일근로임금 별도 표시(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생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u>도급금액</u> ,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 ----- <u>도급금액</u>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 표시한다)----- -----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도급금액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제55조제2항¹⁾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규정 신설 전에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³⁾과 근로자의 날⁴⁾이 유급휴일로 주어졌으나, 동 규정의 시행 이후에는 유급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추가되어 종전보다 약 15일 증가하였고,

제56조제2항⁵⁾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하 “휴일근로임금”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근로기준법」(2018.3.에 개정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법률)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라 함)의 가산율을 근로시간에 따라 할증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⁶⁾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⁷⁾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 시행 이후부터는 근로시간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 초과부터는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여, 장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강화되었음.

「근로기준법」의 동 규정들은 2018년 3월에 개정되어, 제55조제2항은 상시 근로자의 규모 등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제56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⁸⁾되었는데,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생략)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7) 「근로기준법」(2018.3.에 개정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법률)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근로자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④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보다 유급휴일이 증가하고 휴일근로임금 가산을 할증이 도입됨에 따라, 각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을 보임.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유급휴일 증가 등으로 인한 휴일근로임금 증가와 공정 진행에 따라 휴일근로가 많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도급 금액에 휴일근로임금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일근로임금 증가를 계약에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건설공사는 일용직 비율이 높고, 날씨·민원 등으로 인해 근로일수 변동이 잦은 특성상 ‘기본급’과 ‘제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일당 방식)가 일반적이고, ②현행 공사비 산출 방법상(노무량×노임단가) 노무비를 ‘기본급’과 ‘제수당’ 등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⑤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⑥ (생략)

입장이고,

관련 단체의 경우에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휴일근로임금의 별도 기재 필요성, 기재 가능성 및 실익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휴일근로임금 증가가 노무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근로자 임금보장 등을 위해 노무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점과 함께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한건설협회는 ①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임금은 그 범위나 규모를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예측할 수 없어 도급계약서에 구분기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②공공공사는 일요일 시공이 금지⁹⁾되고 민간공사도 휴일근무가 감소 추세로 휴일근로수당 구분 기재의 실익이 없으며, ③대부분의 중소규모 민간공사는 단위당(㎡, 평)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어

9)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휴일근로임금 구분 기재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①휴일근로임금 지급 증가로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하도급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휴일근로임금 지급 확대에 따른 비용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②휴일근로임금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액이 도급계약에 온전하게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임금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